

I 감사개요

1 감사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자체감사의 종류)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7조의4(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)
-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」 제5조(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)
- 2020년 자체감사 및 감찰 종합계획[감사실-8882(2019. 12. 24.)]

2 감사대상시설 및 범위

- 감 사 반 : 감사담당 외 4명
- 감사대상

감사 대상	감사 일정	감사 범위	비고
○○○○○○○○○	2020.10.19.~10.23. (5일간)	2017.9월 ~ 2020.7월 추진업무 전반	

3 증점감사 사항

분야	감사사항
시설운영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- 자체 운영규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등
인사 및 복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원 임면 및 복무관리, 보수 및 기타수당(4대보험, 퇴직적립금, 명절휴가비, 연장근무수당 등) 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여부 - 회계직원의 재정보증 가입여부
예산회계 (후원금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예산편성 절차 및 심의사항 -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회계장부 비치, 증빙서류 첨부 등 - 수입금 수납처리 적정 여부 - 후원금 관리 전반(후원금 장부, 용도 외 사용금지,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,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, 후원금 전용계좌 공개) -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 - 공사·용역 및 물품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
주요사업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○○○○○○○○ : 평생교육 및 여가지원사업,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, 독거노인안전지킴이사업,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,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, 종합상담사업, 사회참여지원사업, 건강생활지원사업, 가족통합지원사업, 지역복지협력사업, 연구조사사업 등

4 처분요구 목록

□ ○○○○○○○○

연번	분야	지 적 사 항	처분요구			비고
			행정상	재정상(원)	신분상	
계		총 6건 (행정적 조치 : 주의 5건, 시정 1건)			-	
1	인사·복무 (1건)	징계 절차에 관한 사항 ☞ 징계심의 요구서 인사위원회 미회부	주의			
2	시설운영 (2건)	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☞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미이행	주의			
3		후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 ☞ 후원금 공개 시 공개 항목 미준수	주의			
4	예산회계 (3건)	경로식당 급식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☞ 적격심사 부적정 및 계약서류 누락	시정			
5		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☞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증빙서류 미첨부	주의			
6		출장 관리에 관한 사항 ☞ 출장대장 미작성, 출장여비 지급시 증빙자료 미확인	주의			

II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

■ 인사·복무 분야

1. 징계 절차에 관한 사항

▶ 기관명 : ○○○○○○○○ 【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】

○ 「○○○○○○○○○ 운영규정집」 [○○○○○○○○○ 인사관리규정 시행내규] 제6장(징계) 제38조(징계절차)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

쳐 징계권자가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- 징계권자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심의 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, 징계권자의 요구가 있는지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나, 징계심의 요구서의 내용만으로는 그 비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심의 요구서를 반려하여 입증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그러나 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서는 내부직원의 징계 처분 심의를 위한 징계심의 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으며, 회부 된 징계심의 요구서 없이 3건의 징계심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.

■ 시설운영 분야

1.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▶ 기관명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 【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】

-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(이하 운영위원회)를 설치·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4조 제4항 및 「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운영규정」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 또한 「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운영규정」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- 그러나 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서는 2018.1.25. 운영위원회 위원 2명의 위촉기간

을 변경하면서 위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2. 후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

▶ 기관명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【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】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5조(후원금의 관리)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1조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(이하 “후원금”이라 한다)의 수입·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(전산파일을 포함한다)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원자의 성명(법인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- 그러나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서는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[별지 제19호서식]을 사용하여야 하나 2017년~2019년 후원금 수입명세서 및 사용명세서 공개 시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 공개 항목 중 일부를 미공개한 사실이 있다. 또한 후원금을 인터넷 등에 공개 시 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 후원금 수입명세서 공개 시 후원

자의 명칭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.

■ 예산·회계 분야

1. 경로식당 급식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

▶ 기관명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【처분요구 : 행정상 시정】

- 「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30조의2(계약의 원칙)에서는 “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 다만, 국가지방자치단체·법인 외의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 고 규정하고 있다.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이라 한다)」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,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, 기술능력, 재무상태, 과거계약이행 성실도,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,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,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,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(행정안전부 예규)」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, 입찰가격, 신인도, 그 밖의 해당물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, 다만,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·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.
 - 가.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: <별표 1>
 - 나.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(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

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)
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: <별표 2>

다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(2억원)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: <별표 3>

또한,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(이하 “적격통과점수”)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.

- 그러나, 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서는 2018년, 2019년, 2020년 경로당 급식 납품 업체 선정에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4장 물품 적격 심사 세부 평가기준 [다. 추정가격 고시금액 (2억원)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<별표 3>] 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,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나, 임의로 작성한 적격심사 평가표를 사용하여 관련규정과 다르게 낙찰자 선정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.
- 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실무」 규정(제4장 계약분야)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(5천만원 초과시), 계약조건,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서, 계약보증서(또는 각서), 청렴계약이행서약서, 수입인지(1천만원 이상)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 등록증 사본,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, 대가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, 기성(준공)검사 조서, 하자보증서(또는 각서),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입찰계약 시)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부증명서,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(자치단체 조례)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지출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. 또한 물품 출납 시 자산취득을 통한 물품구입은 금액과 상관없이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.
- 2018년, 2019년, 2020년 「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경로식당 급식납품업체 전자 입찰 공고문」 ‘6.개찰 및 낙찰자 결정, 계약체결’에서 계약시 제출 서류에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, 축·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각 1부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.
- 그러나 위 현황에서와 같이 2018년, 2019년, 2020년 경로식당 급식납품업체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계약서(5천만원 초과시)를 작성하지 않았으며, 대가지급 시 필요한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제출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, 계약체결 시 축·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

서를 제출받으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를 제출받거나, 계약기간 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았으며, 수산물 업종의 HACCP 인증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2.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

▶ 기관명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【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】

- 「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 - 「2017.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실무」의 예산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중 ‘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업무유관기관은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‘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, 구입 및 지급일시, 수량,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.’ 라고 명시하고 있다.
- 또한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, 일시, 장소,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-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에 의하면 본청 상근직원에게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.
- 그러나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서는 유관기관이 아닌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회원(동아리 등)의 나들이 등에 제공하고자 음료를 구입하여 제공하였으며,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따른 축의·부의금품을 현금 지급 후 수령증을 첨부하지

않았고, 명절(설날, 추석) 선물을 소속 상근직원에게 지급하면서 소속 직원이 아닌 청소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3. 출장관리에 관한 사항

▶ **기관명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【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】**

- 「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운영규정」의 1. 운영규정- 4. 복무규정 시행내규-제 5장 출장의 제25조(국내출장)에 따르면 ‘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근무상황부에 의한 관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.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 받을 수 있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고,
- 같은 규정의 1. 운영규정-6. 여비규정 시행내규-제2장 여비의 제5조(여비의 지급구분) 및 제9조(출장여비)에 따르면 ‘철도운임과 선박운임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이용 등급의 요금을 지불 한다.’ 및 ‘직원이 공무로 국내에 출장할 경우에 별표1과 같이 여비를 지급 한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다.
- 그러나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서는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관외 출장을 하면서 출장대장을 작성하지 않고(사전 근무상황부에 의한 관장의 출장 명령없이)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, 2018년 5월 3일~4일 관외 출장에 따른 대상자의 출장여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면서 교통비 등에 대한 실제 이용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출장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.